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 Customs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관세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OECD Update

OECD-G20, 디지털세 최종 합의 내년 중순으로 연기 (뉴스핌, 2020.10.12)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01200133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로 다국적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세' 관련 최종합의안 도출시점이 올해 말에서 내년 중순으로 미뤄졌다. 최종합의를 도출하더라도 실제 디지털세 부과까지는 2~3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 (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8~9일 영상으로 제10차 총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세 장기대책 필라1·2 블루프린트 (blueprint·청사진)를 승인하고 중간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필라 1에서는 디지털세를 내야하는 업종의 기준이 구체화됐다. 기존에는 디지털서비스사업 및 소비자대상사업을 대상 업종으로 정의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소비자대상사업의 경우

삼정 KPMG

이전가격 & 관세본부

12 October 2020

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승목 전무이사

(Tel: 02-2112-0982)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직접 및 간접판매(프랜차이즈·라이선스 등을 통한 판매)를 포함시키고 중간재와 부품을 판매하는 B2B업종과 천연자원·금융·인프라건설·국제항공·해운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디지털서비스사업은 적용업종과 제외업종을 열거하기로 했다.

과세표준은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세전이익을 기초로 산출하기로 했다. 디지털서비스사업의 경우 최소매출 기준만 적용하고, 소비자대상 사업은 상향된 최소매출 기준과 추가 기준을 적용해 차별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대상사업의 원격 사업활동 정도와 이익률이 낮은 점을 감안해 더욱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다만 행정 및 협력비용을 감안해 구분 면제 및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필라 2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 집단과 그 구성기업에 적용된다. 다만 투자펀드와 연금펀드, 국가기관·국제기구·비영리단체 등은 제외되며,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글로벌매출이 7억5000만 유로 미만인 다국적기업집단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재부는 "필라1·2 blueprint는 핵심사항 등 합의가 아닌 필라1·2의 전반적인 체계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담고 있다"며 "주요 구성요소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소개하고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최종합의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안이 합의되면 이후 다자조약 체결·비준, 국내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에 최소 2~3년 소요될 예정"이라며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를 포함 대부분 IF 회원국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종안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Managing Transfer Pricing and COVID-19

Implications for Financial Services Companies

COVID-19 관련 금융기관 이전가격 관리

COVID-19으로 많은 산업의 수요/공급에 영향이 발생, 금융기관 역시 이에 대한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아 대손 증가(은행), 자산 감소(자산관리회사), 보험 청구액 증가(보험회사) 등 상황 발생. 따라서 이러한 영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이전가격 정책 측면 고려가 필요가 있음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이사

(Tel: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el: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el: 02-2112-7542)

COVID-19 이후 많은 국가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려 노력할 것임, 이에 따라 각국 세무당국이 공격적으로 과세를 시도하며 이전가격에 대한 다툼 역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이전가격 정책, 이를 선택하게 된 이유 및 상황을 문서화하여 이러한 다툼에 사전적으로 대비 필요.

단기적 위기관리 비용

- COVID-19 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 관련 비용에 대한 고려 필요.
 1. 해당 서비스를 경영지원서비스(intra group service / shared service)로 분류하는 것이 올바른가?, 또는 주주 부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가?
 2. 경영지원서비스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현 배부 방식 및 마크업(markup)이 적정한가?
- 상기 고려사항에 따라 COVID-19 관련 위기관리 비용에 대한 이전가격 정책 도출 필요.

원격근무

- 재택근무, 국경 폐쇄 등 이동제한 조치로 상당수 임직원의 근무 환경에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른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 이슈가 발생 가능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 필요.
 1. 의사결정권자 소재 지역 및 주요 기능(core functions) 수행 지역이 변화하였는가?
 2. 변화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변화는 일시적인가 영구적인가?
 3. 사업상 위험부담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권자 또는 기능 수행자들이 이미 고정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으로 이동하였는가?
 4. 세무당국과 이러한 변화에 대해 논의할 적정 시점은 언제인가?
- 상기 고려사항에 따라 원격근무 관련 이전가격 정책 도출

특수관계인간 계약 점검

- COVID-19 으로 인하여 기존 Value Chain 에 영향이 있어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신설 또는 변화되는 경우. 계약서 내 이전가격 관련 부분에 대한 사전적 검토 필요.

- COVID-19 으로 인하여 이전가격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서 내 명시되는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이 COVID-19 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유동성 확보

- COVID-19 으로 인하여 유동성 확보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여러 방법 중 특수관계인간 자금대여를 고려 가능.
- OECD 에서 금년 2 월 발표한 금융거래에 대한 가이드는 특수관계인간 자금대여 관련 기존보다 강화된 분석절차 및 문서화를 권고하고 있음, 또한 소재국가별 규정에 대한 검토도 필요.

디지털화

- COVID-19 으로 인하여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경우, 해당 기술 사용이 일반적 운영을 향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 회사와 차별시켜 이익을 창출하는 가치를 지닌 것 (market differentiator)인지 판단 필요.
- 역사적으로 금융기관의 기술 사용은 일반적 운영에 관련된 면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cost plus method 를 주로 사용.
- 실제 이익을 창출하는 가치를 지닌 기술이라면 cost sharing, profit split method, residual profit contribution 등 방법을 이전가격 정책으로 사용 가능.
- 특정 이전가격방법론을 확정하기 전 회사는 기존 이전가격 정책 및 전략에 해당 이전가격방법론이 부합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DEMPE(development, enhancement, maintenance, protection 및 exploitation) 분석 역시 수행 필요.

2.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 Update

INSIGHT: Covid-19 and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for Digital Companies

October 14, 2020

INSIGHT: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사태가 디지털 기업에 미치는 이전가격 영향

Covid-19 위기로 인해 소비자 지출이 온라인 채널로 빠르게 전환되었으며 원격 교육, 온라인 banking, 화상 회의, 화상 통화, 온라인 게임,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등이 일상 생활에 완전히 융합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의 급격한 증가는 다국적 기업(MNE)의 이전가격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 활동으로부터 창출한 소득에 대한 국가 간의 과세권 배분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2020년 말까지 디지털세 최종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2021년 중반으로 공식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다수의 국가에서 이미 독자적인 조치(예: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도입함에 따라 일부 기업들의 경우 이중과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 디지털 세제 및 최근 이전가격 동향

OECD는 2015년부터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프로젝트(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를 시행하였는데, 그 중 무엇보다도 디지털 경제의 조세 문제를 큰 쟁점 사항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현재 OECD는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이전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 'Program of Work'의 일환으로 연계 기준(Nexus)과 소득 배분에 중점을 두는 Pillar 1과 글로벌 최저한세에 중점을 둔 Pillar 2에 대한 접근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Pillar 1의 일환으로 OECD는 2020년 말까지 합의 기반의 디지털 조세 문제에 대하여 "단일접근법"을 통한 해결책을 도출하기로 합의하였고, 해당 접근법은 다국적 글로벌 기업 소득의 3가지 범주(i.e. Amount A, B, C)에 대해 새로운 과세 연계점 기준을 통해 세금을 부과하는 3단계 소득 배분 매커니즘(a three-tiered mechanism of profit allocation)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Amount A(미정)는 특정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각 조세관할 국가의 "새로운 과세권"입니다. Amount A는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초과이익(residual profit)의 일정 부분을 공식배분방법(formulaic approach)에 따라 각 시장소재지국에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Amount B(미정)는 기존 이전가격 방식에서 벗어나 각 시장소재지국 내 기업이 수행하는 기본적인 마케팅 및 판매기능에

대해 고정된 보상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Amount C는 Amount B에 따라 도출된 이익 배분 결과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예컨대, 양 당사자는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수행한 기능이 Amount B가 적용되는 기본적인 기능을 초과하는 경우 Amount B에 따라 배분된 고정 수익 외 추가적인 보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OECD는 COVID-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세제의 조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10월12일 디지털세 관련 세부 논의 내용을 포함한 중간보고서인 필라1,2 청사진(blueprint)이 발표되었고, 이는 10월 14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승인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OECD가 디지털 세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현 시점에도 다수의 국가들은 임시적 조치로 DST를 도입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디지털 사업이 직접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해당 기업의 디지털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용자로부터 막대한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약 절반의 국가가 DST를 발표, 제안 또는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2%, 터키는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DST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럽 이외의 국가(예: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DST를 도입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다국적 기업의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소재지국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거래를 기반(Transactional basis)으로 DST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DST 과세대상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어떤 종류의 거래를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합니다. DST를 시행하거나 제안한 유럽 국가들을 검토한 결과 각 국가별 과세대상 소득은 아래 범주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온라인 광고, 온라인 시장, 소셜 미디어 플랫폼, 인터넷 검색 엔진, 사용자 데이터 판매, 표적 광고, 다자간 디지털 인터페이스 사용, 사용자 데이터 기반 광고 서비스, 광고 수익,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생성된 사용자 데이터의 전송,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상업적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의 광고, 콘텐츠 판매 및 유료 서비스를 포함한 온라인 서비스”

인도 -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에 대한 최신 지침

인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빈번한 조사로 인한 세무 분쟁이 수반되었으나, 최근에는 납세자를 위한 전산조사 수행 및 단순화된 절차 등 인도 과세당국의 정책 변화로 인하여 세무조사 빈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존 법원 소송을 통한 조세분쟁 해결 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반면, 직접세 판례의 70% 이상의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인도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분쟁을 해결하고 관련 불확실성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MAP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 Pricing Agreement, "APA")를 성공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9월까지 타결된 300건 이상의 APA 및 2016년부터 2017년 동안 합의된 153건 이상의 MAP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인도 정부는 OECD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ction 14(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의 최소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2020년 5월 MAP 규정과 2020년 8월 해당 MAP 규정 관련 절차 및 기술적 측면의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인도의 MAP 절차 및 지침과 관련하여 최근 업데이트된 내용은 무엇인지?

2020년 5월, 인도 당국은 MAP 신청을 위한 특정 절차 및 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한 통지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개정된 규정에서는 24개월 이내에 MAP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인도 과세당국은 2020년 8월 7일에 MAP 절차 및 기술적 요소, MAP의 승인/거부 및 도입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과거 실무적으로 MAP 관련 다루지지 않거나 해결되지 않았던 여러 요소에 대한 불확실성이 한층 해소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MAP 지침은 과거 수년 동안 만연했던 다양한 실무적 관행을 문서화하고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침이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양국간 쌍방 메커니즘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0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